

2026년 제5차 공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공고

공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에서 공무원 등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
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5월 8일

공능유적본부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연 번	채용 분야	직 종	인원	담당업무	채용방법	최초 근무예정지
1	시설물관리원(다급)	공무원 또는 촉탁직	1명	○ 시설물 등 경상 관리 업무수행 ○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	공개경쟁	덕수궁관리소 (덕수궁.송례문)
2	직영소방원(가급)	기간제	1명	○ 소방훈련, 화재진압·예방, 시설 점검 및 관리 등 소방 관련 업무 ○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 지원 업무 ○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	제한경쟁	"

※ 기간제 근로자(연번 2번)는 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공무원(무기계약
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. 단,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
일부 변동 가능)

※ 채용 분야(연번)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

※ 임용 후 업무분장에 따라 덕수궁 또는 송례문으로 배치하며, 이후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공능유적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종묘(사직단)로 전보 가능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공통요건 [판단기준일: 최종시험예정일]

○ 응시연령

- 공무원 : 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
- 촉탁직 : 만 60세 이상 ~ 만 70세 미만
- 기간제 : 만 18세 이상 ~ 만 70세 미만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- 단,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자 가능

○ 공정 채용 기준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공정 채용기준 채용 결격사유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□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

채용분야	응시자격 및 우대사항	
시설물관리원 (다급)	<응시자격> 제한 없음	
	<우대사항>	
	근무경력	시설물관리 분야
자 격 증	<임업/산림/조경/전기 관련 자격증 - 국가기술자격법> 산림기능사, 산림산업기사, 산림기사, 산림기술사, 식물보호산업기사, 식물호기사, 임업종묘기능사, 임업종묘기사, 조경기능사, 조경산업기사, 조경기조경기술사, 시설원예기사, 시설원예기술사, 원예기능사, 전기기능사, 전기산기사,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, 전기공사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산업기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기사	

채용분야	응시자격 및 우대사항			
직영소방원(가급)	<응시자격>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관련학과 졸업자</td> <td>소방학, 소방행정학, 소방방재학, 소방안전, 소방안전관리, 소방환경관리</td> </tr> </table>	관련학과 졸업자	소방학, 소방행정학, 소방방재학, 소방안전, 소방안전관리, 소방환경관리	
	관련학과 졸업자	소방학, 소방행정학, 소방방재학, 소방안전, 소방안전관리, 소방환경관리		
	<우대사항>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근무경력</td> <td>소방 분야</td> </tr> <tr> <td>자격증</td> <td>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, 소방시설관리사, 위험물산업기사</td> </tr> </table>	근무경력	소방 분야	자격증	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, 소방시설관리사, 위험물산업기사
근무경력	소방 분야			
자격증	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, 소방시설관리사, 위험물산업기사			

- ※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
- 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(적극적) 단계에서만 적용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- ※ 자격증은 등급 및 개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며,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
- ※ 근무경력은 연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.
- ※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,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, 직급(직위), 담당업무(예시: 시설물관리, 소방)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
□ 재공고 사항

-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
3. 채용 절차

□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자격요건 적격자 모두 합격(소극적 서류전형)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였을 때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(적극적 서류전형)
 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

□ 면접전형

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- 5개 평가항목별로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| ② 당해 업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 |

- 합격자 결정: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
 -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, '상'의 개수가 같은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 - ※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'하'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
- 동점자 발생 시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 -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면접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점수 공개기준 및 방법
 - 공개기준: 5개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개수
 - 공개방법: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보 공개 청구 시 공개

□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 분야	직 종	최종합격자	예비합격자(운영기한)
시설물관리원(다급)	공무직 또는 촉탁직	1명	1명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
직영소방원(가급)	기간제	1명	"
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
 - ※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, 예비 합격 인원은 적격인원에 따라 적거나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 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4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채용공고 기간	'26.05.08.(금)~05.14.(목)	
원서접수 기간	'26.05.12.(화)~05.14.(목)	빠른등기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까지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'26.05.22.(금)	국가유산청, 공능유적본부(덕수궁)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 예정일	'26.05.27.(수)	*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6.06.02.(화)	국가유산청, 공능유적본부(덕수궁) 홈페이지 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05. 12.(화)~05. 14.(목)
 - 접수방법 : 접수 기간 내 **빠른 등기우편 접수** (겉봉에 “**채용 응시원서 재중**” 표기)
 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(**빠른 등기**)에 한해 접수하며, 우편접수의 경우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.
 - 방문 접수 시간: 09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 제외)
 -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.
 - 접수처 :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채용담당자 앞
 -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(정동) 우편번호 04519
- ※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6.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(필수)
- 응시원서 1부<서식 1>(필수)
- 입사지원서 1부<서식 2>(필수)
- 자기소개서 1부<서식 3>(필수)
- 응시자격 졸업증명서 1부 * 직영소방원 가급 지원만 해당(필수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<서식 4>(필수)
-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<서식 5>(필수)
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<서식 6> (반환 필요시) ※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
- (우대사항) 관련 근무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
- ※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(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)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
7. 근무 기간 ※ 「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름

- 공무원: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며, 평가를 거쳐 공무원 전환 여부 결정

※ 수습 평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
 -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수습 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
 ※ 수습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(수습제도)를 따름

- 축탁직: 채용일로부터 ~ 당해 연도 12.31.까지
 ※ 단,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※ 축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및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을 따름

- 기간제: 채용일로부터 ~ 2027.05.23.까지
- 채용예정일 : '26.06.09.(화)

※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

8. 근로조건 및 보수

□ 근무시간 및 형태/보수 * 1호봉 기준 금액임(공능유적본부 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)

채용분야	근무시간	근무형태	보수		
			기본급	정액급식비	합계
시설물관리원(다급)	07:00~16:00 (1일 8시간)	주 5일 근무	2,097,170원	160,000원	2,257,170원
직영소방원(가급)	09:00~18:00 (1일 8시간)	"	2,537,560원	160,000원	2,697,560원

- ※ 덕수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며,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무일은 변경 가능
- ※ 휴무일은 기관의 근무 편성표에 따르며, 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 주중 휴무일을 비공개일로 조정할 수 있음(감시적근로자 제외)
- ※ 임용 후 업무분장에 따라 덕수궁 또는 송례문으로 배치하며, 이후 결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□ 후생복지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명절휴가비: 설, 추석에 각 지급기준일(명절 당일)의 기본급×60%씩 지급

9. 유의사항

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 이내에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 - ※ 다만,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-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 또는 전달
- 청구하지 않은 채용 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 - ※ 단,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□ 채용 비리 관련

- 채용 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-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기재 사항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희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때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(단,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까지)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 담당자(02-751-0702)에게 문의

붙임: 응시자 제출서류 1부. 끝.

[붙임]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성 명	응시 분야	
	[공무직 또는 촉탁직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물관리원(다급)	[기간제]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영소방원(가급)

■ 작성목록(총괄표)

※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(클립)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플러 미사용)

목 록	작성여부
1.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(필수)	
2. 응시원서(필수) * 서식 1호	
3. 입사지원서(필수) * 서식 2호	
4. 자기소개서(필수) * 서식 3호	
5. 응시자격 졸업증명서 사본 * 직영소방원 가급 지원자만 해당(필수)	
6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(필수) * 서식 4호	
7.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(필수) * 서식 5호	
8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반환 필요시) * 서식 6호	
9. (우대사항) 관련 근무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
10. (우대사항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

* 내용을 작성·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"○" 표시

[서식-1]

응시원서

본인은 공능유적본부(덕수궁관리소)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 등 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 성명 : (서명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

※ 접수 번호			응시 분야	[공무직 또는 촉탁직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물관리원(다급)	[기간제]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영소방원(가급)	사진부착 불요함
	성명	한글		생년월일		
	한자					
주소						
전화 (휴대전화)						

※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

응시표						사진 부착 불요함
< 공무원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 >						
성명	한글		생년월일			
	한자					
※ 응시 번호			응시 분야	[공무직 또는 촉탁직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물관리원(다급)	[기간제]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영소방원(가급)	
년 월 일						
공능유적본부장 (인)						

응시원서 작성요령

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(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)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1. 응시분야 :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
2. 성 명 : 한자(漢字)는 정자로 기재
3. 생년월일 :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
4. 주 소 :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
5. 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
「※」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으며 1페이지로 작성

자 기 소 개 서

◎ 자기소개서 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작성요령

-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
- 글씨크기 12, 줄간격 150mm,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, 머리말·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

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동의서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채용 후 인사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(1)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
- (2) 수집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응시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에 따른 학력·학위·경력·면허사항,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보
- (3) 보유 및 이용기간 : 「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▶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(1)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
- (2) 수집 항목 : **범죄경력정보**
- (3) 보유 및 이용기간 : 「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
※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▶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- (1) 제공 목적 : **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**
- (2) 제공받는 자 : **개인정보 확인기관(자격(면허)증·경력·학위)**
- (3) 제공 항목 : 자격증, 경력사항, 학위 등 응시자격사항·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 확인

에 필요한 사항

(3) 보유 및 이용기간 : 「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
※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, 이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"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"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년 월 일

생년월일

. . . 지원자

(서명)

년 월 일

[서식-6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